

## [남부권역]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- 6차

### 가. 사업목적

- 중소기업의 성장을 위한 단계별 사업화와 시·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기업지원을 통해 기업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

나. 지원규모 : 기업당 연간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 매칭 지원

다. 지원기간 : 2021. 10월 ~ 예산소진 시 까지

- 6차 모집기간 : 2021. 10.19 (화) ~ 10. 27(수)

- 6차 선정결과 안내 : 2021. 11. 9(화) 이후 (예정)

(선정결과는 신청서상 담당자 이메일로 개별 안내합니다.)

※ 2021년 11월 30일까지 출원 완료 기업만 신청바랍니다.

라. 지원내용 : 단계별 창안개발

- 창안개발 : 국내 산업재산권 (디자인, 상표-사후지원)

※ '해외상표, 해외특허, 해외PCT' 모집 완료

※ 평택시, 이천시, 용인시 모집(안성시 예산 소진)

- 제품생산 : 시험분석(사후지원)

※ 시제품(금형, 목업) 모집 완료

※ 평택시, 이천시, 용인시 모집(안성시 예산 소진)

- 판로개척 : 제품패키지개선, 국내홍보판로지원(카탈로그)

※ 그 외 사업은 모집 완료

※ 이천시, 용인시 모집(평택시, 안성시 예산 소진)

마. 지원대상

- 사업비 출연 시(용인, 평택, 이천, 안성) 소재 전년도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으로,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

① 지방세 완납 기업으로 본사 또는 공장이 사업비 출연 시·군 내 소재한 기업

② 제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

- 지식기반서비스업 : 산업발전법 제8조 2항에 따른 업종 중 진흥원에서 인정하는 업종(별표)
- 사업비 출연 연계시군 소재 창업보육센터(중소벤처기업부 및 시·군 지정) 또는 벤처집적시설 내 입주기업 우대
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(17개소) 내 입주기업 우대

**< 경기창업벤처센터 현황 (17개소) >**

- 수원, 성남, 안양, 평택, 안성, 부천, 김포, 고양, 남양주, 의정부(1)(2), 파주, 구리, 양주, 포천, 의왕, 판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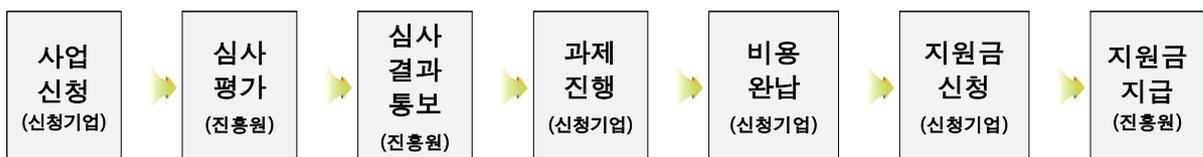
○ 지원제외(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)

-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중소기업
-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(별표2)
-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중소기업
- 휴·폐업 중인 중소기업
- 국세·지방세 체납 중인 중소기업

○ 유의사항

-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로 추가 제출과 보완 요청을 할 수 있으며, 수정 요청 기간 내 서류 보완이 없는 경우 접수에서 배제될 수 있음
- 사업 공고문 및 세부운영기준 등 유의사항 내용 미숙지에 따른 책임은 신청자에 있음
- 작성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소명이 필요할 수 있으며, 소명 절차 이후에도 기재사항 수정이 없거나 부정한 내용 등이 발견되는 경우 서류검토 단계서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음
- 결정된 과제에 한해서 지원(단, 사후 지원사업은 제외), 사업수행 중도 포기 시 지원결정은 취소
- 지원결정 통보(일) 이전에 시행한 과제로 확인 될 경우 해당 과제는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

**바. 지원절차**



**사. 신청방법**

○ 신청기간 : 2021. 10월 19(화) ~ 10월 27일(화)

※ 선정결과발표 : 2021. 11. 9(화) 이후

(선정발표는 담당자 이메일로 안내 예정)

○ 신청방법 :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(www.egbiz.or.kr)

- 홈페이지(온라인) 접속 → 권역별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검색 → 단위 지원사업 클릭 → 신청하기 버튼 클릭 →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→ 온라인 신청하기

○ 제출서류 (온라인 신청 원칙이나, 사업담당자 요청 시 각 관련 담당자에게 우편 또는 방문 접수)

구분	제출서류
필수	01. 지원신청서(온라인 대체) 02. 단위사업별 추진계획서 03. 개인신용정보 등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서(온라인 대체) 04.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원(국세청 발급) 05.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06. 해당사업 견적서 07. 2020년도 재무제표(국세청 또는 세무서) ※ 2020년도 재무제표가 미결산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2019년도 재무제표 및 2020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제출 08. 지방세 납세 증명서(민원24 발급)
가점 항목	·공장등록증명서(민원 24 발급) ·경기도 주식회사 입점 기업 ·국내외 각종 보유 인증 및 기업 인증서 사본 ·보유 산업재산권(국내외 특허, 실용신안, 상표, 디자인 등) 등록서

※ 제출서류 파일명에 번호(ex. 01\_단위사업별추진계획서)를 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**아. 문의 및 접수처**

지역	담당자	전화번호	이메일
이천	이연희 차장	070-7726-9325	melody@gbsa.or.kr
평택	이현아 과장	031-651-7162	shadmoon@gbsa.or.kr
용인	이수진 과장	070-7726-9322	lsj67@gbsa.or.kr

자. 지원내용 : 기업 당 연간 최대 2,000만원 한도 내 지원

○ 총비용 50% 지원(각 과목별 지원한도 이내), 기업 자부담 50%

구분	지원 단위사업	세부내용	최대 지원한도 (지원비율)	비고
창안 개발	국내·외 산업재산권 출원 지원	· 디자인, 상표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 (상표출원 지원 : 국내·해외 / 디자인 출원 지원 : 국내)	특허(520만원) 실용(360만원) 국내상표(200만원)	사후 지원
		· 실용신안, 국내 출원 시 관납료, 선행기술조사비, 대행 기관 수수료 등	국내디자인(280만원) 해외상표(500만원) (50%)	
		· 해외특허 및 해외PCT 출원 시 관납료, 대행기관 수수료 등	500만원 (50%)	
	국내·외 규격인증 지원	· (국내) KS, KC마크 등 기업의 품질,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	300만원 (50%)	사후 지원
		· (국외) UL, FCC 등 해외 규격인증 취득 소요비용	700만원 (50%)	
산업기술 정보제공	· 중소기업의 기술 개발이나 연구개발 아이템에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자료를 조사한 후, 기업체에 제공	200만원 (100%)		
제품 생산	시제품제작 지원 (금형·목업)	· 금형 및 목업 제작비를 지원하여 신제품 개발의 촉진 및 조기 사업화 도모	금형(1,400만원) 목업(500만원) (50%)	금형은 4월 모집
	시험분석 지원	· 국가공인 전문시험분석기관·연구소 및 대학 연구센터의 시험 장비를 활용한 도내 중소기업의 시험분석비 지원	150만원 (50%)	사후 지원
판로 개척	홈페이지 제작지원	· 한글 /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비 지원	200만원 (50%)	
	국내·외 전시 박람회 참가지원	· 국내·외 개최되는 공식 전시·박람회 참가 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	국내(300만원) 해외(500만원) (50%)	
	모바일 앱 제작 지원	· 기업 제품홍보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한글 또는 외국어로 된 모바일 앱 제작비용 지원	150만원 (50%)	
	제품 패키지 개선 지원	· 기업 판로 확대 및 제품홍보 위한 제품의 박스, 포장지 등 디자인·제작비용 지원	300만원 (50%)	
	온라인 회의 시스템	· 온라인 회의 시스템 도입 비용 지원	150만원 (50%)	
	국내홍보 판로 지원	전문잡지	· 기업 및 제품 홍보 광고비 지원	300만원 (50%)
홍보 동영상		· 기업 및 제품 홍보 동영상물 제작비 지원 (일반영상 또는 3D 영상)	일반(300만원) 3D(400만원) (50%)	
카탈로그		· 수출 및 해외전시회참가 위해 국문 또는 외국어로 제작하는 제품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	200만원 (50%)	

※ 부가가치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초과분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

**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**

## 공통 운영기준

### 가. 지원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

- 결산 등의 이유로 전년도 재무제표 제출이 어려울 시 전년도 재무제표 및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)을 함께 제출
- 재무제표 작성·제출 의무 기업이 아닌 경우 부가가치세과세 표준증명원(국세청) 제출
- 지방세 체납기업은 신청 불가하므로, 사업 신청 시 기업은 체납여부 확인
- 사업비 출연시군소재 여부 및 휴·폐업 확인을 위해서 사업자등록증명(국세청 발급) 제출
  - ※ 사업자등록증은 불인정
- 공장등록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공장등록증명서(민원24 발급) 제출
  - ※ 공장등록증은 불인정
-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신청 시,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 입주 여부 ([www.bi.go.kr](http://www.bi.go.kr)(창업넷) 확인), 시·군 지정 창업보육센터(입주계약서) 입주여부 확인
-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경기창업벤처센터(17개소) 입주기업 신청 시, 경기창업벤처센터(입주계약서) 입주여부 확인

### 나. 대행업체 선정 시 유의사항

- 사업 신청기업은 추진과제와 연관된 업태와 종목이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대행업체를 선정하여야 함
- 사업 신청기업은 사업자 본인과 민법상 친·인척관계에 해당하는 대행업체를 선정할 수 없음

### 다. 지원결정 사항의 변경요청

- 결정된 지원사항의 변경(지원기간, 대행업체)이 발생할 시에는 사전에 사업 신청서식 중 “단위사업 변경승인 요청서”를 진흥원 담당자에게 제출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
- 사전 승인 없이 대행업체, 과제 범위 및 내용 등 주요 사항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 불인정
- 변경의 경우 대행업체 및 지원기간에 한하며, 선정된 지원과목의 변경은 불가함
  - 다만 불가피하게 총 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경우 사업 담당자 검토 및 승인을 득한 후 진행해야 함

### 라. 지원결정 취소사항

- 사업 공고일 이전에 이미 시행·완료된 경우(사후신청 사업은 제외)
- 타 기관에 동일한 과제로 중복지원 받은 경우
- 사업완료 시점 선정기업이 어떠한 답변 없이 사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또는 완료 제출자료 보완 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(과제)은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, 통보 후 직권 취소 처리할 수 있음
- 지원과제의 지출비용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급하거나, 지출한 비용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사업완료 불인정
- 타 기업의 결과물을 도용한 경우
- 사업 추진 중 또는 사업완료 시점에 경기도 이외 지역 또는 사업비 출연시군 이외(또는 신청 권역 이외 지역)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선정 취소 될 수 있음
- 전문가 판단에 의거 결과보고서 등이 현저하게 부실하거나 과제수행에 불성실한 경우,

제출한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

- 기타 진흥원의 판단에 의거 지원철회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신청기업에 부도, 폐업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

**마. 지원과제 비용지출 시 유의사항**

- 사업자가 사업비 전액(부가세 포함)을 선 지출한 후 지원금 신청서,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진흥원에 제출하면, 검토 후 신청기업에게 계좌이체 형태로 지급
-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화에 따라, 사업비 지출은 전자세금계산서 처리를 원칙으로 함. 단,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사유가 있는 경우 미사용 사유서 제출
- (법인)카드 사용 시 (법인)카드 사본, 카드사용 영수증, 결제한 법인카드 이용내역 명세서 사본 자료 제출에 한해 비용증빙 인정
- 부가세 및 관세 등 사후 환급금과 지원 사업비 초과분에 대해서는 사업주 부담임
- 지원금 지급 시 천원미만 절사하여 지급

**바. 완료보고서 및 증빙자료 제출 시 유의사항**

- 선정기업의 사업 담당자 변경 시 인수인계 미실시 등에 따른 사업 과제 미완료의 경우 해당 책임은 기업에게 있음
- 지원금 신청서 및 완료보고서 등 제출서류는 선정된 과제 종료 후 본 사업 만료 30일 이전 까지 지출증빙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담당자 승인을 얻어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
- “선정된 과제 종료”라 함은 선정 기업이 사업 완료 후 대행업체에 최종 비용 지급을 완료한 것을 말함
- “본 사업 만료”라 함은 진흥원이 주관하는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 사업 마감을 말함
- 진흥원은 선정기업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미흡한 부문에 대해서는 자료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
  - 제출서류 : 지원금신청서, 완료보고서, 완료 결과물, 지방세납세증명서, 선정기업 통장사본 (선정기업명 계좌)
  - 지출증빙 : 세금계산서, 온라인 입금증(이체확인증), 기타 진흥원이 요청한 자료 일체(필요시)
- 진흥원은 필요시 현장방문 확인 후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음
- 선정기업이 특별한 사유 없이 중도 포기 시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

**사. 신청 및 선정대상 제외**

- 공고일 기준, 신청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.
  - ① 민원야기, 환경오염, 불법공장 등 사회적 물의를 빚은 기업
  - ② 국세 및 지방세 등 세금 체납기업
  - ③ 금융 불량 거래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규제 중인 기업
  - ④ 휴·폐업 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
  - ⑤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

⑥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동일한 아이টে으로 타 사업을 수행 중인 기업

※ 자연재해 등 불가항력적 사유에 의한 일시적 재무악화 기업의 경우 ⑤호 항목에 대해 예외로 인정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그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예 : <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>에 의한 '재해중소기업확인증'등)를 제출해야 함.

아. 위법·부당 선정기업에 대한 제재조치

- 위법·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선정기업에 대해서는 진흥원 「기업 지원사업 운영규정」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
  - 위법·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
  - 형사고발(문서의 위·변조, 사기, 업무방해, 금품·향응제공 등 위법·부당행위 수반 시)
  - 향후 지원배제(금액과 횟수,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)
  -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(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)
- 지원사업 포기기업에 대한 제재사항은 각 센터(권역) 담당자가 상황에 맞도록 센터별 사업 계획 시 수립

[별표 1]

##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범위

해당업종	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○ 환경 정화 및 복원업	39
○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	582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	5911
○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	5912
○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	59201
○ 전기통신업	612
○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	62
○ 정보서비스업	63
○ 연구개발업	70
○ 광고업	713
○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	714
○ 경영컨설팅업	71531
○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	72
○ 전문디자인업	732
○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	73902
○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	73903
○ 물품감정, 계량 및 견본 추출업	73904
○ 그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73909
○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	74100
○ 보안시스템 서비스업	75320
○ 전시 및 행사 대행업	75992
○ 포장 및 충전업	75994

※ 산업 업종코드 확인방법

☞ <http://kostat.go.kr>(통계청사이트) → 통계분류포털 → 한국표준산업분류 → 검색 → 분류검색  
→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 확인 및 검색 → 해당업종 및 분류코드 확인

[별표 2]

## 중소기업 개발생산판로 지원사업 제외 업종 총괄표

업종	품목코드	해당업종
제조업	33402中	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
	33409中	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
도매 및 소매업	46102中	주류, 담배 중개업
	46109中	골동품, 귀금속 중개업
	46209中	잎담배 도매업
	46331, 3	주류, 담배 도매업
	46416中	모피제품 도매업(인조모피제품 도매업제외)
	46463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도매업
	4764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 소매업
	47859中	성인용품 판매점
	47911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오락기구, 성인용품도소매업
음식점 및 주점업	56211~2	일반(무도)유흥 주점업
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	58122中	경마, 경륜, 경정관련 잡지 발행업
게임 소프트웨어 및 공급업	5821中	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
그 외 기타 정보 서비스업	63999中	온라인게임아이템중개업, 게임아바타중개업
금융 및 보험업	64~66	금융 및 보험업
부동산업	68	<b>부동산업, 다만 부동산관련 서비스업(682)은 제외</b>
산업용 기계 및 장비임대업	69390中	도박기계 및 사행성,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
전문서비스업	71531中	기획부동산업
사업지원 서비스업	75330中	흥신소
	75993	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
	75999中	경품용 상품권 발행업,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	91113	경주장 운영업
	91121	골프장 운영업
	9122中	성인용게임장, 성인오락실, 성인PC방, 전화방
	91249	기타 캐블링 및 베팅업
	91291	무도장 운영업
기타 개인 서비스업	9612中	증기탕 및 안마시술소
	96992	점집, 무당, 심령술집 등
	96999中	휴게텔, 키스방, 대화방

※ 상기 이외 표기되지 않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유흥 및 사행성 관련 또는 전문가 판단에 의거 지원요건에 부적합한 업종은 지원 제외